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1-74
----------	---------

제안년월일 : 2021년 8월 일
제 출 자 : 강 서 구 청 장

1. 제안이유

-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민에게 수준 높은 보육정보 등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및 부칙 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명로2길 50 (내발산동)	1205.42m ² (지하1,지상3)	·지하1층: 장난감도서관, 기계실 ·지상1층: 시간제보육실 ·지상2층: 실내놀이터, 열린육아방 ·지상3층: 상담실, 교육실 등

나. 필요성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바,
-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구의 양육과 보육의 중심 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음

다. 주요 위탁내용

- 위탁근거[별첨1]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 제17조(설치 및 운영)
- 위탁체 선정: 신청서 접수 후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에 의해 서면 및 면접 심사 (대표자 및 센터장)
- 위탁기간(5년 예정)
 - 2022. 1. 1. ~ 2026. 12. 31.
- 위탁사무
 -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제외)
- 소요예산: 761,238천원

(단위: 천원)

센터명	합계	2021년도 지원 예산			자부담액
		국비	시비	구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761,238	8,000	171,660	580,578	1,000

라. 추진일정

- 공고기간: 21일 [2021. 9. 8. (수) ~ 2021. 9. 28.(화)]
- 접수기간: 14일 [2021. 9. 15. (수) ~ 2021. 9. 28.(화)]
- 강서구 보육정책위원회 개최(예정): 2021. 10월중
- 위탁체 선정 및 위탁계약체결 등: 2021. 10월말

추진근거 관계 법령

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1의2.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조례』 제17조

- 제17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간을 제외한 그 밖의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위탁 규정에 따른다.

[별첨2] 위치도 및 층별소개

가.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도



나.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층별소개

옥상	<p>하늘놀이터</p>					
3층	상담터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육아종합지원센터(사무실)	
	반짝놀이터 (창의력교실)	발코니		지혜터 (교육실)		
2층	어울림센터 (맘스카페)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플짝놀이터/안내데스크 (체험놀이실)	
	책꿈터 (어린이도서관)	발코니				
1층	옹기종기교실 (시간제보육실)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드림어린이집	
입구	시간제보육 상담실					
지하 1층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참고	
외부계단				키득키득 놀잇감터 (장난감 도서관)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시설명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784,075	807,597	831,824	856,778	882,481	4,162,755

※연 3%증액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21년 지원 기준)

○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보조): 351,320천원

[국: 8,000천원 / 시: 171,660천원 / 구: 171,660천원]

- 인건비(5명): 33,656,000원 x 5명 = 168,280천원(시비50%, 구비50%)
- 운영비(센터운영 및 보육사업 수행비): 183,040천원
 - 센터운영비: 106,000,000원 x 1식 = 106,000천원(시비50%, 구비50%)
 - 맞춤형부모교육: 40,000,000원 x 1식 = 40,000천원(국비20%, 시비40%, 구비40%)
 - 어린이집안전관리관 운영: 37,040,000원 x 1식 = 37,040천원(시비50%, 구비50%)
(인건비: 25,460,000*1명 / 운영비: 11,580,000원 *1식)

○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자체): 408,918천원[구비100%]

- 인건비(4명): 33,597,000원 x 4명 = 134,388천원
- 운영비(센터운영 및 보육사업 수행비): 274,530,000원 x 1식 = 274,530천원
 - 센터운영비: 215,000,000원 x 1식 = 215,000천원
 - 유아동전문가교육지원: 10,000,000원 x 1식 = 10,000천원
 - 어린이집 환경개선인력지원: 49,530,000원 x 1식 = 49,530천원

5. 작성자: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담당자: 사회6급 김예은 2600-6756)